

# 조선 후기 醫藥 관련 王室 儀禮 연구 - 『度支五禮考』를 중심으로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A study on medicine-related royal rituals: Focusing on Takji-oryego

Hun-Pyeong Park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akji-oryego (A Review of the Five manners relat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is a book organized by Hojo (Joseon's Ministry of Finance) and the cost and details of royal events held according to five manners. This book contained a lot of information on medicine-related ri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us, it was found that the royal rituals related to medicine include not only childbirth and fertility, but also Heuljeon and Sangjeon.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newly discovered:

- 1) The time of transcription was between October 1840 and October 1841.
- 2) Huljeon (Privilege given to save) is also related to the rise of the status of medical officials after King Sukjong.
- 3) According to Heuljeon, medical bureaucra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d a higher position than other technical officials.
- 4) The contents of reward were complementary to the existing literature. The date of death of a medical official, which was unknown in previous studies, is documented. In a case like Sansilcheong, there are contents that are unknown through other sources.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Takji-oryego, Hyupjeon, Naeuiwonuiwon, Royal medicine

### I. 서론

『度支五禮考』는 조선 인조부터 현종대까지 五禮에 따라 거행한 왕실 행사 비용과 내역을 戶曹에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유일본으로 일본 오사카 부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현진은 이 책의 필사 시기를 현종 재위(1835-1849) 간으로 보고 조선 후기의 왕실 의례와 중앙 재정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자료라 평가하였다.<sup>1)</sup>

그런데 『탁지오례고』 내용에는 의약 관련된 기록도 발견된다. 이 내용은 다른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없거나, 있더라도 참고하여 보완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그동안 의학사 연구자에게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의료 관련한 왕실 의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왕실의 출산과 장태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자인 김용숙은 대한제국 궁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을 보충하여 출산, 洗胎, 安胎 등의 주제를 분석했다.<sup>2)</sup> 그 외에 육수화, 김호, 김지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탁지오례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의약 관련 의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

접수 ▶ 2021년 04월 25일 수정 ▶ 2021년 04월 26일 채택 ▶ 2021년 05월 04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동신대학교 대정4관  
한외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 1) 이현진.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소장 탁지오례고의 내용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2016;72:463-486.
- 2)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일지사. 1987:246-267.
- 3) 육수화는 『태산요록』, 『태교신기』를 통하여 왕실의 태교를 살피고, 『호산청일기』를 통하여 왕실 출산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안태등록』을 통하여 안태의 과정과 절차를 분석했다.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서울:민속원. 2008:42-99. 김호는 『산실청총규』와 『호산청일기』를 통하여 왕실 출산의 절차를 살피고, 『님산예지법』을 통하여 출산 지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태 문화에 대해서는 『일성록』 등을 조사하였다. 김호. 『조선왕실의 의료문화』. 서울:민속원. 2017:64-165. 김지영은 “장태문화가 왕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게 해주는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라 분석했다. 김지영.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 역사와세계. 214:45:74.

다. 기존의 선행 연구가 의료 관련한 왕실 의례는 출산과 장태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는 왕실 의약 의례를 다른 영역까지 더욱 넓게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行)을 보면 “當宁六年”이 마지막에 나오므로 1840년 10월 24일이 필사 시기의 상한이 된다(사진 2). 동지사행은 해마다 가는 사행이며, 실제 1841년 10월 24일 冬至兼謝恩正使 李若愚가 사행을 떠난다.<sup>6)</sup> 그럼에도 본문에는 “當宁七年”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의 필사 시기는 1840년 10월과 1841년 10월 사이이다.

## II. 본론

### 1. 서지 연구

#### 1) 형태 및 필사 시기

『탁지오레고』는 호조에서 편한 7권 7책의 필사본이다. ‘趙萬永印’으로 보아 19세기 세도가였던 풍양조씨 조만영(1766-1846)의 장서로 추정된다. 표지에 “度支五禮考”라 표제가 되었고, 책의 크기는 33.3×22.0 cm 四周單邊, 반곽 24.5×16.8 cm, 有界, 10행20자, 註雙行, 上向二葉花紋魚尾이며, 五針眼으로 제작되었다(사진 1).<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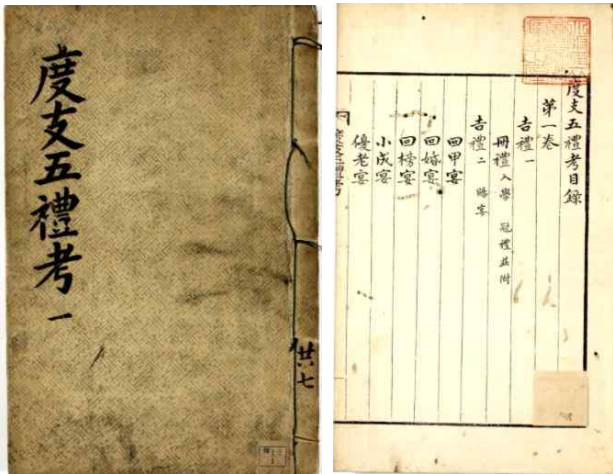


사진 1. 『탁지오레고 권1』 표지와 목록

이현진은 책 내용에서 “純宗, 翼宗”의 묘호와 “當宁”로 지칭되는 이가 현종임을 밝히고,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되는 1835년 5월 이후 순종이 순조로 바뀌는 1857년 10월 이전으로 필사 시기를 추정했다.<sup>5)</sup>

그런데 본문 내용에 더욱 중요한 단서가 있다. 『제6책』 「使



사진 2. 『권6』 「使行」의 “當宁六年” 내용

#### 2) 구성과 내용

각 권은 1책 분량으로 책별로 목록과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1책에만 전체 내용에 대한 목록이 따로 수록되었다. 권7에는 「賞典式例」가 목록 앞에 있다.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4) 호조(1840-1841). “度支五禮考”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2021.2.4.)

5) 이현진. op. cit. p. 464-466.

6) 『승정원일기』 1841년 10월 24일 기사.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1.2.4.) 규장각(1783-1910).

표 1. 책별 내용 일람

冊	대분류	소분류
1	吉禮 一	冊禮
	吉禮 二 (7)	回甲宴, 回婚宴, 回榜宴, 小成宴, 優老宴, 賜几杖宴, 宣謚
	嘉禮 (11)	大王嘉禮, 世子嘉禮, 世孫嘉禮, 諸嬪吉禮, 大君吉禮, 王子吉禮, 王孫吉禮, 公主吉禮, 翁主吉禮, 君主吉禮, 縣主吉禮
2	凶禮 一 (13)	國葬, 禮葬, 諸嬪禮葬 貴人禮葬, 昭儀禮葬, 大君及府夫人禮葬 王子及府夫人禮葬, 王孫及府夫人禮葬 公主及都尉禮葬, 翁主及尉禮葬, 君主及尉禮葬, 顯主及尉禮葬, 宗室禮葬
		國舅及府夫人禮葬, 大臣禮葬, 卿宰禮葬 奉保夫人禮葬, 致賻式, 宗臣恤典
3	凶禮 二 (6)	儒臣恤典, 勳臣恤典, 宰卿以下文蔭武恤典 醫譯以下恤典, 宮人恤典, 內寺恤典
4	軍禮 (5)	甲子适變, 丁卯胡難, 丙子胡難, 戊申麟佐亂 辛未景來亂
		歲幣, 方物, 勅使出來數, 支勅, 通信禮單, 倭人禮單
5	賓禮 一 (5)	使臣驢行, 使行, 通信使驢行, 通信
6	賓禮 二 (4)	入學, 冊禮, 冠禮, 嘉禮, 吉禮, 上號, 陳賀, 進宴, 患候不復, 產室廳, 室加封, 聽政, 講筵, 親耕蠶, 射禮, 舉動, 幸行, 影幀御眞奉安時, 御眞奉安時, 瑤源譜畧修正, 御製睿製繕寫, 刊印, 冊印, 追崇, 國恤, 耐廟, 陵園墓修改, 碑役, 營役, 造成
7	附 賞典 (30)	

## 2. 의약 관련 내용

### 1) 凶禮와 賓禮

흥례에서 의약 관련된 내용은 『권4』 「醫譯以下恤典」에 수록되었다. 「의역이하홀진」은 의관과 역관 이하의 원역에게 주어진 홀전에 관한 내역이다. 이들 내용의 출전은 모두 『別例房別騰錄』이다.<sup>7)</sup> 別例房은 1777년까지 經費司라 불리었는데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경비의 지출 등을 관장하는 호조 속의 관청이었다.<sup>8)</sup> 『별례방별등록』은 현재 규장각에 고종대의 1책이 남아있으나(사진 3)<sup>9)</sup> 다른 시기의 등록은 모두 실전되었다. 만약 『별례방별등록』이 더 발견된다면 고위 직 의관 몰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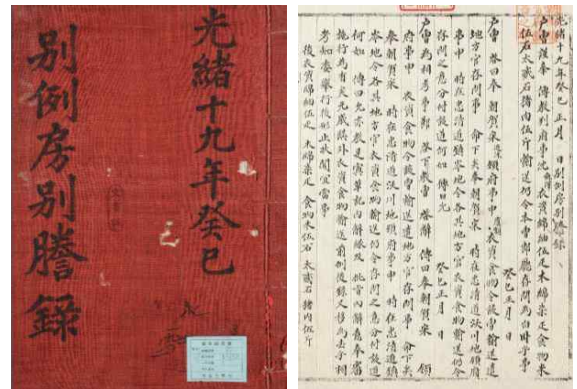


사진 3. 『별례방별등록』 표지와 본문 첫 면

총 26명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의관이 13명이다(표 2).<sup>10)</sup> 「의역이하홀진」에서의 호칭은 首醫 1명, 良醫官 1명, 御醫 5명, 醫官 6명이다. 良醫官을 제외한 호칭은 관력을 확인해 보면 별 구분 없이 쓰였다. 良醫官은 儒醫 출신의 의관 호칭이다.

표 2. 「의역이하홀진」 의관의 호칭과 관력

	이름	호칭	官歷
1	柳後聖	御醫	崇祿大夫, 牧使 內鍼, 同參
2	鄭後啓	良醫官	崇祿大夫, 府使 進士, 內鍼, 同參
3	崔聖任	醫官	崇祿大夫, 府使 醫科, 同參, 內醫
4	金有鉉	醫官	崇祿大夫, 府使 內鍼, 同參
5	李應斗	首醫	嘉義大夫, 內鍼
6	李時聖	醫官	崇祿大夫, 僉使 武科, 同參
7	方震夔	御醫	崇祿大夫, 縣監 醫科, 內醫
8	權聖徵	御醫	崇祿大夫, 縣監 內鍼, 同參
9	玄起鵬	醫官	崇祿大夫, 縣監 醫科, 內醫
10	金應三	御醫	崇祿大夫, 府使 醫科, 內醫
11	鄭趾彦	御醫	崇祿大夫, 縣監 醫科, 內醫
12	金壽燿	醫官	崇祿大夫, 郡守, 同參
13	金德崙	醫官	崇祿大夫, 縣監 譯科, 同參

7) 『탁시오례고』는 각 본문 내용 말미에 참조 문헌이 나온다.

8) 한국학중앙연구원(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1.2.5.)

9) 1893년(고종 30)의 기록으로 필사본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 중이다. 별례방(1893). 「別例房別騰錄」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2.10.)

10) 표 2-3에서 의관의 관력과 생몰은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35-36, 55, 78, 95, 98, 152, 195, 331, 349, 467, 474, 517, 577-578. 관력에서 「內鍼」은 내침의, 「同參」은 의약동참의 약자이다.

의관의 홀전은 승록대부(중1품 上階의 官階), 즉 의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官階에 오른 이들만을 대상이었다.<sup>11)</sup> 이들은 내의청, 동참청, 침의청에서 首醫를 지낸 이들이다. 李應斗의 사례만 관계가 중 2품인 가의대부로 예외인데 홀전 시행일도 사후 9년 후에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이다. 이응두도 침의청의 수의를 역임했다. 의관의 홀전 시행은 대상자가 사망한 달에 국왕의 전교로 바로 이루어졌다. 「의역이하홀전」의 기록을 통해 기존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없었던 의관의 사망 年月이 고증된다(표 3).

표 3. 「의역이하홀전」 의관의 홀전 시행일

	이름	홀전 시행	기존 연구의 생몰
1	柳後聖	1669.10.2.	1584.12.-1669.2.
2	鄭後啓	1670.11.8.	1600.-1670.
3	崔聖任	1709.6.	1632.-1709.
4	金有鉉	1715.5.	1632.-1715.
5	李應斗	1725.3.(1716. 사망)	1646.-?
6	李時聖	1725.7.	1647.-1725.7.
7	方震夔	1729.	1655.10.-1729.1.
8	權聖徵	1738.3.	1666.-1738.3.
9	玄起鵬	1750.10.	1684.11.-1750.8.
10	金應三	1751.2.	1680.-1751.
11	鄭趾彦	1758.4.	1697.-1758.4.
12	金壽燿	1764.9.	1678.-1764.
13	金德崙	1767.9.	1703.-1767.9.

의관 홀전 기록은 현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의 의관만 수록되었다. 그러나 정조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현종 때의 사례인 류후성과 정후계는 둘 다 양반 가계의 적자로서 숙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인 출신의 의관은 홀전을 받을만한 官階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홀전은 숙종 이후 의학 관료의 지위 상승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의관과 역관 이하에게 주어질 홀전에서 26명 중 50%에 달하므로 조선 후기 의학 관료가 기술직 관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들어 기술직 관원 의역관은 모두 높은 관계를 받고 목민관을 비롯한 동반 실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度支五禮考』에서 역관의 경우 홀전 사례가 1사례에 불과하다. 『度支五禮考』에 기술됨은 이전 사례를 통하여 이후에 같은 상황에서 적용하고자 함이다. 즉 국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의관은 다른 기술직 관

원들과 다르게 홀전이라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홀전 품목으로 무명과 쌀이 주어졌다. 현종 때까지는 喪需 용도로 木綿 15필, 쌀 5섬이다가 숙종 이후는 祭需 용도로도 같은 양이 주어졌다(표 4). 여기서도 이응두의 사례는 예외이다. 이응두의 관계가 2품인 까닭으로 양이 더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의역이하홀전」 의관의 홀전 내역

	이름	木綿(疋)	米(石)
1	柳後聖	喪需 15	喪需 5
2	鄭後啓		
3	崔聖任	喪需 15	喪需 5
4	金有鉉	祭需 15	祭需 5
5	李應斗	喪需 10	喪需 5
6	李時聖	喪需 15 祭需 15	喪需 5 祭需 5
7	方震夔		
8	權聖徵		
9	玄起鵬		
10	金應三		
11	鄭趾彦		
12	金壽燿		
13	金德崙		

빈례에서 의약 관련된 내용은 『권6』에서 2개 항목이다. 먼저 「使臣驢行·軍官譯官寫字官日官醫員畫員」은 중국 사행의 원역으로서 醫員이나 御醫가 참여하는 경우인데 “쌀은 4석 내로 【1석을 줄인다.】, 흰 비단 2필, 正布 2필, 무명 5필 【1품 正使이면 2필을 더한다.】”<sup>12)</sup>이 각자 주어졌다. 다음의 「通信使行·堂下譯官製述官寫字官畫員醫員」은 통신 사행의 원역으로서 醫員이 참여하는 경우인데 “쌀은 10석, 삼베 4필, 무명 2필,<sup>13)</sup> 靴 1부 【因工曹에서 마련한다.】, 黑通絹 28척 【겉감용이다.】, 藍通絹 28척 【안감용이다.】”이 각자 주어졌다.

## 2) 常典

상전<sup>14)</sup>에서 의약 관련 기록은 『권7』에서 4개 항목인데, 「患候平復」, 「産室廳」, 「冊印」, 「造成」이다.

「患候平復」은 惠慶宮(정조의 친모), 嘉順宮(순조의 생모), 上(임금), 世子宮, 世子嬪宮, 淑善翁主(순조의 동생) 관련된

11) 허준같이 功臣冊封을 받아 승록대부 보다 더 높은 관계에 오른 사례가 있지만 특수한 경우이다.

12) 「軍官譯官寫字官日官醫員畫員」 “各, 賜米四石內 【減一石.】, 白綿紬二疋, 正布二疋, 木綿五疋 【若值一品正使行時則加二疋.】”

13) 「通信使行·堂下譯官製述官寫字官畫員醫員」 “各, 賜米十石, 布子四疋, 木綿二疋, 靴子一部 【因工曹關磨鍊.】, 黑通絹 二十八尺 【外拱次.】, 藍通絹 二十八尺 【內拱次.】”

14) 김용숙에 따르면 궁중에서는 “賞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행사에 따르는 포상의 의미이다. 김용숙. op. cit. p. 256-257.

患候의 平復 때 상전 내역이다(표 5). 內局(내의원)이 주된 대상이지만 承政院, 掖庭署, 해당 궁의 원역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탁지오례고』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患候平復」은 議藥廳 관련된 내용이다. 의약청은 중궁, 세자, 빈 등이 질환이 있을 때에 내의원에서 설치하는 임시청이다.<sup>15)</sup>

표 5. 「患候平復」의 賞典 항목

중분류	소분류
惠慶宮患候 平復時	① 正宗 己未三月(1799.3.)
	② 庚申二月(1800.2.)
	③ 純宗 丁卯二月(1807.2.)
	④ 戊辰二月 藥乳進上時(1808.2.)
	⑤ 辛未正月(1811.1.)
	⑥ 壬申十月(1812.10.)
嘉順宮患候 平復時	① 純宗 壬午十月(1822.10.)
上候 平復時	① 純宗 辛酉十二月 水痘(1801.12.)
	② 壬戌十二月 疹候(1802.12.)
	③ 乙丑三月 痘後(1805.3.)
	④ 丁卯十二月(1807.12.)
	⑤ 壬申三月(1812.3.)
	⑥ 乙亥正月(1816.1.)
世子宮 紅疹 平復時	① 純宗 壬午十二月(1822.12.)
世子嬪宮紅疹 平復時	① 純宗 壬午十一月(1822.11.)
淑善翁主痘患 平順時	① 正宗 丙辰年十月(1796.10.)
	② 純宗 壬戌十二月 疹候(1802.11.)

「患候平復」의 상전 내역들은 『승정원일기』, 『일성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탁지오례고』의 내용과는 서로 달라서 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문효세자가 홍역에서 회복되었을 때 『탁지오례고』의 내용은 종약서원 등 낮은 지위의 員役들만 기록하였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내용은 동일하며 提調와 醫員 같은 높은 지위도 함께 기록하였고 낮은 직위의 원역도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서원의 세부 명칭에 차이가 있으며 인원도 다르다(표 7).<sup>16)</sup>

표 7. 文孝世子 紅疹 平復時 賞典 사례

탁지오례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미수록	都提調右議政 林漢浩 / 內廐馬鞍具一匹面給	
미수록	御醫 吳千根 / 守令除授	
種藥書員二 使喚書員十一 - 中藥 - 各末三斗	藥色書員吳鐵植等十人 / 各從自願免賤. 書員金宗範等十三人 / 各木布合該曹賜	

「産室廳」은 왕비의 출산 때에 개설되는 産室廳<sup>17)</sup>과 安胎 관련하여 지급된 상전 내역이다(표 6). 翼宗은 순조의 세자로 孝明世子이다. 明溫公主, 福溫公主는 翼宗의 동생으로 순조의 딸이다. “世子宮誕生時”는 효명세자의 아들인 憲宗의 출생 때를 말한다. 세자와 공주의 관련 용어가 “誕生, 安胎”와 “誕生, 藏胎”로 다르다. 현종조에는 왕비의 출산이 없어서 산실청이 배설되지 않았다.

표 6. 「産室廳」의 賞典 항목

중분류	소분류
翼宗大王 誕生時	① 産室廳 (1809.9.)
	② 安胎時
明溫公主 誕生時	① 産室廳 (1810.10.)
福溫公主 誕生時	① 産室廳 (1818.11.)
	② 藏胎時
世子宮 誕生時	① 産室廳 (1827.7.)
	② 安胎時

『탁지오례고』의 산실청 관련 상전 내역은 『승정원일기』, 『일성록』의 내용과 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익종의 출생시 산실청 관련하여 『탁지오례고』에서는 書員 이하의 산실청의 고지거나 水工 등 지위가 낮은 員役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산실청 외부의 승정원, 內閣, 玉堂 등에 내려진 상전도 하급 원역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반하여 『승정원일기』는 제조와 의관 등 높은 지위의 員役 위주로 기술하였다. 『일성록』은 낮은 지위의 원역 이름까지 나오는 등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었다(표 8).<sup>18)</sup>

15)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38.

16) 『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12월 일 기사. 『일성록』 순조 22년 12월 3일 기사.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1.2.4.) 규장각(1783-1910). “日省錄”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2.10.)

17) 산실청은 분만일 3개월 전에 설치되어 출산 이후 혁파되는 임시청이다. 후궁의 경우 護産廳을 분만하는 달에 설치하였다.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32-36.

18) 『승정원일기』 순조 9년(1809) 8월 15일 기사.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1.2.4.) 『일성록』 순조 9년 8월 15일 기사. 규장각(1783-1910). “日省錄”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2.10.)

표 8. 翼宗 産室廳의 賞典 사례

탁지오례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미수록	都提調議政府右議政 金思穆 / 熟馬一匹·鞍具面給	都提調右議政 金思穆 / 鞍具馬一匹面給子婿弟姪中調用
미수록	待令醫官竝加資, 而其外醫官 / 依己巳年例爲之,	醫官吳千根 卞觀海竝加資, 李漢臣從前效勞甚多守令除授趙宗協 - 하략 -
藥色書員二, 掌務書員二等	미수록	藥色書員白聖圭等二人, 掌務書員朴世元等二人
承政院 書吏白弘運等二十五人, 正書朝報書吏洪道鍾	미수록	政院待令書吏十七, 朝報書吏一

「冊印」은 국왕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책들의 刊役 관련하여 지급된 상전이다. 의약 관련된 내용은 정조 23년(1799) 11월 『濟衆新編』·『雅訟』 刻役時에서 鑄字所에 지급된 상전 내역이다. 이 내용은 『일성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19)</sup> 주자소 관련 상전이라 의학 관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造成」은 왕실 관련된 물품의 제작과 改修 관련하여 지급된 상전 내역이다. 의약 관련된 내용은 정조 20년(1796) 10월 『瓊玉膏製進時』에서 內局에 지급된 내역이다.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나오지 않는다. 경옥고는 내의원에서 年例劑造하거나 年例進上하는 물품이 아니므로<sup>20)</sup> 특별히 상전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차례만 기술 되었으므로 약제조의 경우 상전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상의 상전 관련 내용으로 볼 때 『탁지오례고』가 대개 『일성록』에 비하여 내용이 간결하다. 그러나 왕실의 상전이라는 주제로서 구분하여 파악하기는 『탁지오례고』가 『일성록』 등에 비해 더 쉽다. 내의원의 원역은 의약청과 산실청의 업무를 통하여 정례적으로 상전을 받았다. 즉 임시청이 배설만 되면 관련된 모든 원역이 상전을 받았다. 약제조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만 해당된다. 또한 『탁지오례고·상전』은 의약 내용이 아니어도 높은 지위의 원역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낮은 지위의 원역에 대한 사례를 살피기 위한 저술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III. 결론

『度支五禮考』는 五禮에 따라 거행한 왕실 행사 비용과 내역을 戶曹에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하여 조선 후기 의약 관련 의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의약과 관련된 왕실 의례는 출산과 장례 뿐 아니라 홀전과 상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첫째, 필사 시기는 1840년 10월과 1841년 10월 사이이다. 『제6책』 「使行」에 나오는 “當寧六年”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둘째, 홀전은 숙종 이후 의학 관료의 지위 상승과도 관련된다. 의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官階에 오른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내의청, 동참청, 침의청에서 首齋를 지낸 이들로서 1품 승록대부의 관계였다.

셋째, 홀전을 통해 보면 조선 후기 의학 관료가 다른 기술직 관원에 비하여 지위가 높았다. 의관과 역관 이하에게 주어질 홀전에서 26명 중 50%에 달한다. 조선 후기 들어 기술직 관원 특히 의관과 역관은 높은 관계를 받고 목민관을 비롯한 동반 실직을 제수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度支五禮考』에서 역관의 경우 홀전 사례가 1례에 불과하다. 이는 왕실 의례에 의해 의관과 역관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넷째, 홀전과 상전 내용은 기존 문헌과 서로 보완적이다. 의관의 홀전 시행은 대상자가 사망한 달에 국왕의 전교로 바로 이루어졌다. 「의역이하홀전」의 기록을 통해 기존 선행

19) 『일성록』 정조 23년 11월 17일 기사. “『아송』과 『제중신편』을 새길 때의 서울의 각수 유택룡 등 2명에게는 각각 목 2필을, 劉澤興 등 4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포 1필을, 南太白 등 10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李得鎭 등 6명에게는 각각 포 1필을, 田得春에게는 미 3말을 사급하였다. 평양의 각수 尹宗禧 등 5명에게는 각각 목 2필을, 孔祖聖 등 4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포 1필을, 崔齊宅 등 3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미 3말을, 李宅馨 등 4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전주의 각수 金恒 등 3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미 3말을 사급하였다. 제각장 장종득, 소목장 김만재 등 2명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사급하였다. 사환군 2명에게는 각각 미 3말을 사급하였다.” 규장각(1783-1910). “日省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2021.2.9.)

20)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39-49.

연구에서 알 수 없었던 의관의 사망 年月이 고증된다. 患候 平復, 산실청 등과 같은 사례에서 『탁지오례고』는 다른 문헌의 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 참고문헌

1.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일지사. 1987: 246-267.
2. 김호. 『조선왕실의 의료문화』. 서울:민속원. 2017:64-165.
3.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32-49.
4.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11-606.
5. 옥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서울:민속원. 2008:42-99.
6. 김지영.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 역사와세계. 214:45:39-76.
7. 이현진.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소장 탁지오례고의 내용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2016;72:463-486.
8. 별례방(1893). “別例房別臚錄”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2.10.)
9.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1.2.4.)
10. 규장각(1783-1910). “日省錄” 규장각 원문자료검색 (2021.2.10.)
11. 규장각(1783-1910). “日省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2021.2.9.)
12. 한국학중앙연구원(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1.2.5.)
13. 호조(1840-1841). “度支五禮考”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2021.2.4.)